

영등포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7. 18.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영등포구의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 본청 기구의 분리·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 부서 신설 >

- 국제지원과 - 3개팀  
외국인지원팀 · 국제금융팀 · 대외협력팀
- 주택과 - 4개팀  
주택행정팀 · 주택개발팀 · 주택정비팀 · 도시개발팀
- 보건지원과 - 4개팀  
보건행정팀 · 건강도시팀 · 방역팀 · 보건민원팀

### < 부서 소속 변경 >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과	주택관련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 계획업무만 수행하므로 명칭변경	
보건위생과	위생과	보건지원과 신설로 보건·의료분야와 위생분야가 분리되므로 명칭변경	
교육지원 담당관	교육지원과	직속기관(국) 변경에 따라 명칭변경	

### < 직속기관 변경 >

조 정 전		⇒	조 정 후	
직속기관(국)명	부 서 명		직속기관(국)명	부 서 명
부구청장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교육지원과	

###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지원과, 주택과, 보건지원과를 신설(안 제5조)하고 “도시경관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명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개편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며,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은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잦은 면은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7. 18.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개정2006.4.28>